

의안번호	2208690
의 퇴 인	김동아 의원
회 답 일	2025.4.4.
추계번호	25A1384

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발명 제작 지원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각 5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25억원 (연평균 5억원)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시작품 및 시제품의 제작 지원	500	500	500	500	500	2,500	5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5조 (시작품 및 시제품의 제작 지원)	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된 발명품에 대해 시작품(試作品)¹⁾ 및 시제품(試製品)²⁾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1. 제6조의 제2호 및 제3호³⁾ 2. 제28조의 제4항⁴⁾에 따라 실시한 발명 등의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 3. 그 밖의 특허청장이 사업화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발명	재량규정

- 1) 시험용으로 초기 제품 설계 단계에서 제작한 제품
- 2) 사업화 단계인 실제 제조공정에서 제작한 제품
- 3) 「발명진흥법」 제6조(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활동의 촉진)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2. 학생·여성 및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의 촉진
 3.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와 우수 발명자에 대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
- 4) 「발명진흥법」 제28조(발명 등의 평가기관 지정 등) ① 특허청장은 제2조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이전, 거래, 사업화 등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공립 연구기관, 정부출연연구기관, 민간연구기관 또는 발명 등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하 "평가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 전문인력, 평가 조직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 - ③ 발명 등의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 등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 등의 평가를 실시한 후 지체 없이 그 평가 결과서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로 된 평가 결과서를 포함한다)를 의뢰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

Ⅲ. 비용추계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35조 (시작품 및 시제품의 제작 지원)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특허청은 현재 시작품과 일부 시제품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, 개정안의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므로 이를 추계 대상으로 함
 - 시작품에 대해서 특허청은 IP-R&D 전략지원(1233-303) 내 지재산 연계 연구 개발 전략지원(제품지원) 사업에서 지원중임
 - 특허분석을 통해 제품 상용화 기술개발(R&D)을 지원하고, 3D랜더링·설계·위킹 목업 등 시작품 제작·검증을 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품 과제당 평균 20백만원을 지원중임

[표 2] 특허청 시작품 제작 예산 및 건수

	(단위: 백만원, 건)		
	2023	2024	2025
예산	-	1,000	1,120
제작 건수	-	50	56

자료: 특허청

- 특허청은 시제품과 관련해서 생활발명코리아 사업에서 여성생활발명품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은 운영하고 있으나, 이외에 시제품 지원사업은 수행하고 있지 않음
 - 생활발명코리아 시제품 제작지원 예산은 [표 3]과 같으며, 해당 사업은 '생활발명품'에 대한 시제품 제작 관련이므로, 타 사업대비 제작이 용이하여 과제당 제작비용(556만원)이 낮음

[표 3] 특허청 생활발명코리아 사업 시제품 제작 예산 및 건수

(단위: 백만원, 건)

	2023	2024	2025
예산	226	234	278
제작 건수	39	39	50

자료: 특허청

- 개정안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시제품 제작 지원 비용은 과제당 평균 시제품 제작 비용에 지원대상 기업 수를 곱하여 산출함
 - 과제당 평균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50백만원으로 가정함
 - 특허청 제출자료에 의하면, 전자제품의 시제품 제작비용을 기준으로 한 업계의 평균 단가가 50백만원으로 이를 추계에 적용함
 - 현재 특허청 지원 사업 수혜기업 중 우수기업인 10개 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함
 - 특허청 사업인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(제품지원)의 수혜기업 대상인 56개사 중 우수기업 10개사에 대해 시제품 제작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함
 - 과제당 시제품 제작비용(50백만원)에 지원 대상 기업 수(10개)를 곱하면, 추가 재정소요는 연 5억원으로 산출됨
- 개정안에 따라 발명제작 지원 대상에 시제품을 추가할 경우,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각 5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25억원으로 추계됨

[표 4] 시제품 제작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시제품 및 시제품의 제작 지원	500	500	500	500	500	2,500	5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assembly.go.kr